
농업기술센터

농정과



[코로나 위기극복 영농지원 바우처(성립전)] (P - 55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1. 4~12월 ○ 위 치 : 김포시 관내
- 사업규모 : 108농가(화훼 58, 친환경농산물납품 50)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위기극복 및 가계생활 안정도모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	
계		118,000		104,000	14,000	118,000
국 비		118,000		104,000	14,000	118,000
도 비						
시 비						
기 타						자부담

□ 예산 증감사유

- 화훼농가 추가 대상 확대 증감(국비 변경내시)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	제3조
근거내용	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. 1. 생활안정지원: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(이하 “재난피해자”라 한다)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 2) 농업·어업·임업 및 소금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						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가계생활 안정자금(영농) 지원으로 농가경영 회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2회추경 요구액	비고
합계			14,000	
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	201-02 사무관리비	·홍보물 제작 등 운영경비 : 1,000,000원 =	1,000	
	302-02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	·화훼농가 : 1,000,000원*13농가 =	13,0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1. 4.~5월 : 1차 바우처 신청 접수
- 2021. 5. : 지원제외 대상자 이의신청 접수 및 재검증
- 2021. 6.~8월 : 2차 바우처 신청 접수
- 2021. 4.~11월 : 바우처 사용
- 2021.12. : 정산실시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21년	○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 ○ 1차 선정(52농가)-농협선불카드 지급	6.30일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21년	118,000	8,441		109,559	6.30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농정과	농정팀장 장오규	담당자	해양수산8급 박성원	전화	2809
-----	-----	----------	-----	------------	----	------

[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사업(성립전)] (P - 55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1. 4~12월
- 사업규모 : 84명(만 65세 이상 보구꽃리 48, 전류1리 36)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야간 보행환경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간 교통안전 물품을 지원하여, 농업농촌 고령인의 삶의 질 향상

○ 대 상 지 : 월곶면, 하성면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	
계		4,560			4,560	
국 비						
도 비		4,560			4,560	
시 비						
기 타						자부담

□ 예산 증감사유

- 경기도 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사업 선정 2개 마을(84명) 교통안전물품 보급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「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조례」	제5조의4
근거내용	제5조(지원사업) 도지사는 고령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. 4. 고령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						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농촌특성상 교통약자인 고령농업인에게 야간시간대 실용성이 있는 교통안전 물품을 전달하여 보행환경이 취약한 농촌지역에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사고 피해를 최소화
- 지원품목: 4종(야광지팡이 84개, 야광조끼 84개, 야광밴드 84개, 야광반사판 36개)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2회추경 요구액	비고
합계			4,560	
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사업	201-01 사무관리비	·야광지팡이 : 20,000원 * 84명 = ·야광조끼 : 20,000원 * 84명 = ·야광밴드 : 10,000원 * 84명 = ·야광반사판 : 10,000원 * 36명 =	1,680 1,680 840 36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1. 5.~7월: 성립 전 예산 편성
- 2021. 7.~8월 : 교통안전물품 보급
- 2021.10. : 정산실시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21년	○ 경기도 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사업 선정(84명) ○ 추가 선정(1,651명) : 39,900천원	6.30일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21년	4,560	0		4,560	6.30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농정과	농정팀장	장오규	담당자	해양수산8급 박성원	전화	2809
-----	-----	------	-----	-----	------------	----	------

(코로나19 위기극복 영농지원) (P - 55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1. 8.~12월 ○ 위 치 : 김포시 관내
- 사업규모 : 40농가(화훼 22, 친환경농산물납품 15, 농촌체험휴양마을 3)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위기극복 및 가계생활 안정도모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	
계		20,000			20,000	
국 비						
도 비						
시 비		20,000			20,000	
기 타						자부담

□ 예산 증감사유

- '2021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' 미선정 농가의 직접 지원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「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전 지원 조례」	제4조
근거내용	(생활안정 지원)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코로나19의 발생·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할 수 있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계속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자본 <input type="checkbox"/>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보조재원 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가계생활 안정자금(영농) 지원으로 농가경영 및 농촌체험관광 조기회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2회추경 요구액	비고
합계			20,000	
코로나19 위기극복 영농지원	302-02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	·화훼농가 : 500,000원*22농가 = ·친환경농산물납품농가 : 500,000원*15농가 = ·농촌체험휴양마을 : 500,000원*3개소 =	11,000 7,500 1,5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1. 8. : 공고 및 신청접수
- 2021. 9~10월 : 대상자 선정 및 지원(김포페이)
- 2021.11~12월 : 사업비 정산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농정과	농정팀장 장오규	담당자	해양수산8급 박성원	전화	2809
-----	-----	----------	-----	------------	----	------

(시설원에 넷제로 기초DB구축(통계조사)(성립전)) (P - 56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1. 6. ~ 8월
- 사업대상 : 농업경영체 1,443개소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온실현황 및 에너지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시설원예분야 에너지 이용구조의 면밀한 검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	
계		8,082			8,082	
국 비		8,082			8,082	
도 비						
시 비						
기 타						자부담

□ 예산 증감사유

-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시설원예분야 에너지 이용합리화 정책마련을 위해 통계조사 실시에 따른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편성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통계법	제3조
	통계법 시행령	제2조
근거내용	1. “통계”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·평가 또는 경제·사회현상의 연구·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·물가·인구·주택·문화·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(이하 “기관등”이라 한다)에 위임·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. 다만,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는 제외한다. 1. 통계작성기관이 대외적인 공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업무 추진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						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시설원에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조사 실시에 따라 조사원(3명)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(우편 발송) 필요
- 김포시 소재 온실을 소유한 농업경영체 1,443개소를 대상으로 온실현황 및 에너지이용실태 조사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2회추경 요구액	비고
시설원예 넷제로 기초DB구축 (통계조사)		합 계	8,082	
	101-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	· 인 건 비 : 2,494,000원*3명 =	7,482	
	201-02 공공운영비	· 우편요금 : 416원*1,443건 ≙	6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1.06. : 조사원 채용
- 2021.07. ~ 08월 : 온실이용실태 조사 및 입력 실시, 인건비 등 지급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농정과	농업지원팀장 장영신	담당자	농업7급 채유진	전화	2810
-----	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농업기술센터

축수산과



(축산농가 생활·경영안정지원) (P - 57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1. 7. ~ 2021. 10.
- 사업규모 : 300농가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코로나-19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축산농가 지원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	
계		117,000	-		117,000	117,000	
국 비			-				
도 비			-				
시 비		117,000	-		117,000	117,000	
기 타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코로나-19 위기극복 및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 경제적 어려움 해소 지원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	제5조13호
근거내용	시장은 김포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 종사자와 교육·보육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지원대상자”라 한다)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 시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도 지원대상자로 본다. 13. 「축산법」제22조 따라 시에 허가·등록된 축산업 농가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심의	공유재산관리계획	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	민간위탁의회의동의	출연·출자회의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코로나-19 이후 생산·고용·물가상승·소비저하 등 소상공인 및 특수직에 대한 관심은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정부재난지원에서 소외되었고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이종고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 지원
- 지원대상 : 산법 제22조에 의거 축산업 허가·등록한 농가
- 지원기준
 - 생활안정지원 :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의거 살처분 명령 및 이행 농가
 - ┌ ASF(아프리카 돼지열병) : 2019. 9 ~ 12.기준
 - └ AI(조류인플루엔자) : 2020. 11. ~ 2021. 02.기준
 - 경영안정지원 : 2020.12.31.현재 축산업 허가·등록한 농가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2회추경 요구액	비고
축산농가 생활안정 지원금	302-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	· 1,000,000원 * 27농가 =	27,000	
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	302-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	· 300,000원 * 300농가 =	90,000	

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
-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(계획수립,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)
 - 2021.07. : 사업추진계획 수립
 - 2021.08. : 신청공고, 사업대상자 선정
 - 2021.09 ~ 10. : 사업시행 및 정산(완료)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9년	해당없음	
2020년	해당없음	
2021년	-	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9년					
2020년					
2021년					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축수산과	축산팀장 최근식	담당자	농업6급 최근식	전화	2804
-----	------	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살처분 보상금(성립전) (P - 57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1.1.1.~12.31.
- 사업규모 : 44 개소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가축전염병 감염축 의심축 살처분 및 오염물건 폐기 등에 따른 보상금 지급으로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 도모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	
계	50,000	3,795,000	-	2,950,000	845,000	3,745,000	
국 비	40,000	3,111,111	-	2,360,000	751,111	3,071,111	성립전 751,111
도 비	5,000	388,889	-	295,000	93,889	383,889	성립전 93,889
시 비	5,000	295,000	-	295,000	-	290,000	
기 타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2020~2021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수립
- AI 살처분 농가 보상금 지급을 위한 성립전 예산 추가 수립(845,000천원)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가축전염병 예방법	제48조(보상금 등) 제1항
근거내용	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2.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, 주사, 주사·면역표시, 약물목록, 면역요법,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(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)의 소유자 3.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(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	계속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자본 <input type="checkbox"/>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 <input type="checkbox"/>	보조재원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1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관련 살처분 농가 보상을 위한 예산 교부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2회추경 요구액	비고
살처분 보상금 지원	301-12 기타보상금	가축전염병 등 감염축 살처분 보상비 =	845,0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1.02 : 성립전예산수립 및 선지급(50%)
- 2021.03 : 1회 추경예산수립
- 2021.06 : 성립전예산수립 및 선지급(발생농가 30%, 예상농가 85%), 본지급(소규모농가 보상 25호, 오염물건 폐기농가 보상 4호 부화장 보상 2호, 육계농가 보상 1호)
- 2021.09 : 2회 추경예산수립
- 2021.03~2021.12 : 가축질병(ASF, 구제역·AI, 결핵, 브루셀라 등) 발생관련 살처분 보상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9년	소 결핵병 발생농가 보상 1호 기립불능소 보상 1호 구제역 백신 부작용 폐사 가축 보상 8호 ASF 발생농가 50% 선지급	
2020년	ASF 발생농가 보상 23호 구제역 백신 후 부작용, 폐사 가축 보상 7호 AI 발생 전업농가 9호 27% 선지급	
2021년	AI 발생 전업농가 13호 선지급 (발생농가 30%, 예상농가 85%) 소규모농가 보상 25호, 오염물건 폐기농가 보상 4호 부화장 보상 2호, 육계농가 보상 1호 구제역 백신 부작용 폐사 가축 보상 1호	6.30일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9년	17,468,300	8,135,218	9,333,081	1	
2020년	9,383,081	9,369,292	-	-	
2021년	3,795,000	3,071,325		723,675	6.30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축수산과	가축방역팀장 신철우	담당자	수의7급 홍혜영	전화	2827
-----	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농업기술센터

농업진흥과



농촌체험관광 패키지 운영 농가 지원 (P - 58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1. 8월 ~ 11월
- 사업규모 : 18개소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체험 사업장의 경영난 등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한 농촌체험사업의 지속성 확보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	
계		9,000			9,000	
국 비						
도 비						
시 비		9,000			9,000	
기 타						자부담

□ 예산 증감사유

- 코로나19에 따른 농촌체험관광 패키지 운영 체험농장 지원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	제5조(지원대상) 12
근거내용	<p>제5조(지원 대상) 시장은 김포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 종사자와 교육·보육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지원 대상자”라 한다)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 시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도 지원대상자로 본다.</p> <p>12. 「김포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도농교류활동 지원을 위해 시에서 인증 받은 농촌체험관광패키지 운영 농가</p>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결
경상■	자본□	-	-	-	-	-	-	-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코로나19 장기화 및 대유행 본격화에 따른 방역지침 강화로 타격이 큰 농촌체험 사업장 핀셋지원
- 농촌체험관광 개발 계획에 의거 뽕뽕투어 인증 농가 대상 재난지원을 통한 농촌체험관광 패키지 운영 사업 지속
- 여행업 분야 재난 지원사업이 이뤄졌으나 농촌체험농가의 경우 ‘교육서비스, 농촌체험’ 등록에 따른 재난 지원제외로 소외된 체험농가 지원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2회추경 요구액	비고
(코로나19대응)농촌체험관광 패키지 운영 농가 지원	302-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	500,000원*18개소 =	9,0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-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(계획수립,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)
 - 2021.05. : 기본계획수립
 - 2021.08 ~ 11 : 사업집행(재난지원금 지급)
 - 2021.11. ~ 2021.12. : 결과보고 및 평가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: 해당없음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농업진흥과	농촌관광팀장 강효정	전화	5074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	------